

「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등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소집수당, 재해보상금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「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」을 준용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명칭 변경
-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)
-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5조~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,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